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
2025. 6. 24(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(행정안전국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9일 의안번호 제2694호로 금천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예비비 지출내역

○ 801-01 일반예비비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 산 과 목		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 위	세 부	통계목					
합 계				73,673,000	47,740,000	0	25,933,000	
자 치 행정과	구 정 참 여 지	민 서울특별시 교 육 감 보 궐 선 거 사 무 추 진	사무관리비	21,173,000	14,740,000		6,433,000	2024.10.16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
			공공운영비	2,500,000	0		2,500,000	
주 민 안전과	재 난 안전 관 리	구 민 안 전 보 험	공공운영비	50,000,000	33,000,000		17,000,000	구민대상 안전보험 운영 지속화

○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4,774만원이며 지출잔액은 2,593만 3천원임.

3. 검토의견

-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“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지출”하는 것으로,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지출로 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나,
- 정확한 편성의 결여로 일부 불용된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 시에는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할 것임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71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